

# 「SH비전스쿨」업무 협약서

배움을 나누는 사람들(이하 “배나사”)과 서울특별시 SH공사(이하 “SH공사”)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 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저소득층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는 SH비전스쿨의 운영을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(기본원칙)**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
**제3조(업무분담)**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

- 가. 대학생 강사 선정 및 관리
- 나. 중학생 학습 교재 개발 및 강의(학습지도)
- 다. 학생과 강사의 정서교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

2. SH공사

- 가. 「SH 비전스쿨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
(교재인쇄, 오리엔테이션, 워크샵, 대관료, 통신비용 등)
- 나.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지원

3. 기타 추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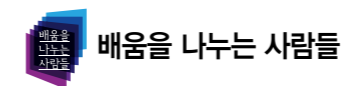
**제4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)** “배나사”, “SH 공사”는 본 협약 체결에 의한 「SH비전스쿨」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업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협약 기간 중은 물론, 협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협의체 운영)** “배나사”, “SH공사”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역내 전문가나 복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기간)** 본 협약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,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상기 기관 대표간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6 월 22 일



대표 이준석



사장 변창흠

# 「SH비전스쿨」업무 협약서

배움을 나누는 사람들(이하 “배나사”)과 서울특별시 SH공사(이하 “SH공사”)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을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 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저소득층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는 SH비전스쿨의 운영을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(기본원칙)**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
**제3조(업무분담)**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
  - 가. 대학생 강사 선정 및 관리
  - 나. 중학생 학습 교재 개발 및 강의(학습지도)
  - 다. 학생과 강사의 정서교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SH공사
  - 가. 「SH 비전스쿨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
(교재인쇄, 오리엔테이션, 워크샵, 대관료, 통신비용 등)
  - 나. 「SH 비전스쿨」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지원
3. 기타 추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)** “배나사”, “SH 공사”는 본 협약 체결에 의한 「SH비전스쿨」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업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협약 기간 중은 물론, 협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협의체 운영)** “배나사”, “SH공사”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역내 전문가나 복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기간)** 본 협약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,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상기 기관 대표간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6 월 22 일

서울특별시  
**SH** 에스에이치공사

사 장 변 창 흠

배움을 나누는 사람들

대 표 이 준 석